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7.

발 의 자 : 이성윤 · 박균택 · 윤준병  
김정호 · 장경태 · 주철현  
조계원 · 문대림 · 이연희  
조정식 · 서영교 · 전현희  
서미화 · 채현일 · 박은정  
이원택 · 윤후덕 · 김 현  
김기표 · 임미애 · 복기왕  
김 윤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·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,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.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와 외국인 등 우수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,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임.

이에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 · 취업 · 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 · 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

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.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,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조 등).

##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”을 “만들어 사회통합을 실현하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발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 사항

제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6.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·취업·창업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연구와 추진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우수 해외인재 육성·정주여건 지원)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

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·취업·창업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
2. 우수 해외인재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
3. 우수 해외인재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취업정보, 자녀 보육·교육 등 지원

② 법무부장관은 우수 해외인재의 사증 발급,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
제17조의 제목“(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의 처우)”를“(외국국적동포 등의 처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(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를 “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”로, “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”를 “정착지원·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의2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회의 구성·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6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·취업·창업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연구와 추진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6조의2(우수 해외인재 육성·정주여건 지원)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·취업·창업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

2. 우수 해외인재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

3. 우수 해외인재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취업정보, 자녀 보육·교육 등 지원

② 법무부장관은 우수 해외인재의 사증 발급,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
제17조(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 하였던 자 등의 처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(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,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·체류 또는 대한민국

제17조(외국국적동포 등의 처우)

① -----  
-----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  
----- 에 따른 외국국적동포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<p>안에서의 <u>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.</u>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----- <u>정착지원·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의2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준용한다.</u></p>
---	---